■ 법률 칼럼

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

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범죄 경력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
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.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보통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살인,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,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(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)에 가정폭력,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/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.

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.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.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(Moral Turpitude Crime)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 범죄는 살인, 강간, 절도, 사기, 배우자 폭행, 납치,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.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.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.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.

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.

사진=shutterstock

Law Offices of
Joseph KW Choen
천관우 변호사
●LA Office: (213) 232-1655
●OC Office: (714) 522-5220
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■ 장례 칼럼

장례 개략3. 매장 및 화장 예식의 종류

■ 매장 예식

▶Immediate Buria

임종하면 장의사에서 모셔가고 사망증명서와 매장허가서가 발급되면 묘지와 연락하여 적당한 시간에 매장하는 것이다. 어떠한 종교적인 예식이나 가족친지들의 참여 없이 진행된다.

▶Graveside Service(하관 예배)

임종 후에 장의사에서 모셔간 후 사망증명서와 매장허가서가 발급되면 묘지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매장하는 순서이다.

▶가족장

시신을 준비하고 사망증명서와 매장허가서가 발급되면 묘지로 가기 전 가족들만 모여 약식 기도회를 가진 후 매장하러 간다.

▶Full Funeral Service(정식 장례예배)

시신을 관에 모시고 예식장에서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환송식을 가진 후에 묘지로 가서 하관하는 예식이다. 주로 미국식은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 Open Casket, 시신을 보도록 관 뚜껑을 열어 둔다. 관을 열지 않고 뷰잉 없이 할 수도 있다.

■ 화장 예식

▶Direct Cremation(디렉트 크리메이션)

화장의 기본 단위이다. 각 장의사마다 이름을 미화하나 근본적으로 사망한 장소에서 모시고 간 후 화장한 유골을 가족에게 드리는 것이다. 가족의 시신 확인 혹은 모습을 보는 시간과 절차가 없다. 물론 가장 저렴하다

▶가족장

시신을 장의사로 모셔오고 임종 시 망자를 보지못한 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잠시 망자를 본 후 화장하여 유골을 가족에게 드리는 식이다. 미국식 뷰잉(Public Viewing)이 없고 시신 방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

▶사회장

동포 사회에서 많이 행하여 온 방법이다. 고인을 시신 방부 처리하여 관에 모시고 장의사의 식장을 빌려 환송 예식을 드리고 관을 열어 뷰잉한 후 화장하여 유골을 가족에게 드리는 예식이다. 만약 관을 열지않고 망자를 보지 않는다면 시신 방부처리하지 않아도 된다.

위의 디렉트 크리메이션이나 가족장을 할 경우 가족 친지 교우들과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다

■ 예식의 종류

▶장례예배(Funeral Service) – 시신을 모시고 예식을 드리면 Funeral Service 라고 한다

▶추모예배(Memorial Service) – 시신 없이 유골이나 영정사진을 두고(없어도 된다) 예식을 하면 Memorial Service, 추모예배라고 한다.

사진=shutterstock

이효섭 장의사, 시신방부사
(FDR4701, EMB9702)
(714) 951-2520, (714) 870-6303
501 W. Commonwealth Ave,
Fullerton, CA 92832

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!

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,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.

목 · 허리 디스크 탈출증 / 좌골신경통 / 퇴행성 디스크 / 척추관협착증 / 만성요통

★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(HMO Group : SMG, CENTER 환영)

Dr. 윤동준
서울대학교/ UC Irvine
LA 척추신경의대
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
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
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
가든 그로브 개업 31년

진료과목 (각종 근육,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)

머리 두통/어지럼증/안면마비증세
목 목디스크 (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) /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
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/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(Frozen Shoulder) / 오십견/견비통
등 척추측만증(Scoliosis) 특수교정(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)
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(엉치, 다리,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, 마비증상 동반) / 퇴행성 관절염 / 요통/산후 허리통증
팔 팔꿈치 통증/Tennis Elbow/손목/Carpal Tunnel Syndrome/손,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
다리 좌골 신경통(다리, 발바닥, 발가락 통증,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) / 무릎통증/발목통증/쥐증상

교통사고
직장사고
운동사고 및
각종 일반 사고
후유증 전문치료

•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
•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
• DRX 9000 (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)
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,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,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"최고 권위 전문의"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

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. 539. 1717
12620 Brookhurst St. #5, Garden Grove